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상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3. 12. 20.

발 의 자: 한상민 의원 등 8인

1. 제안이유

- 가.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사전 신고 및 허가 대상에서 적용을 배제함.
- 나.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양주시 내 정당 현수막 난립 및 도시경관과 시민 보행 안전 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참고 1.)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미첨부 사유서(붙임 1.)
- 다. 그 밖의 사항
 - 1) 의정협의회: 2023. 12. 20.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2. 21 ~ 12. 27. (7일간)
 - 나) 예고결과:
 - 3) 부서협의(붙임 2.)
 - 가) 협의기간: 2023. 11. 20. ~ 12. 4. (15일간)
 - 나) 협의결과: 수용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정당 현수막) ① 정당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정당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등이 없어야 한다.
2. 시장은 1호의 위반에 대한 사항을 양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 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가. 시장 등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 표시가 설치된 곳

4. 현수막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설치된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를 가리지 아니할 것

6.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가로등 기둥, 가로수, 전봇대에는 현수막이 2개를 초과하도록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이때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가.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나.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다. 건물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설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양주시의회
입 안 자	직위·성명	한상민 의원 (대표발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6조의2(정당 현수막) ① 정당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정당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등이 없어야 한다.</u> <u>2. 시장은 1호의 위반에 대한 사항을 양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u> <u>3. 다음 각 목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u>가. 시장 등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u> <u>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 표시가 설치된 곳</u> <u>4. 현수막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u> <u>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u>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설치된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가리지 아니할 것

6.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가로등 기둥, 가로수, 전봇대에는 현수막이 2개를 초과하도록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이때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가.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나.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 건물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
내인 곳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설치한 정당 현
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정당 현수막
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붙임 2**검토의견 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2013.7.22.>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제3조제3항 관련>

수신	의회사무과	발신	주택과	
검토부서	주택과 광고물관리팀		담당자 성명	성현욱
자치법규명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검 토 사 항	유	무	특기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검토안	검토사유 (의견)
	붙임1	붙임2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1. 검토안

□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인 시민보행 안전의 보장을 위하여 개정되는 법령 및 시행령에 맞춰 안전 관련 조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개정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수정안

제6조의2(정당 현수막) ① 정당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정당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등이 없어야 한다.
 2. 시장은 1호의 위반에 대한 사항을 양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 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 가. 시장 등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 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 표시가 설치된 곳
 4. 현수막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설치된 현수막 및 그 게시 시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영상 정보처리기를 가리지 아니할 것
 6.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가로등 기둥, 가로수, 전봇대에는 현수막이 2개를 초과하도록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이때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가.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나.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다. 건물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설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 경기도 내 타 시·군 유사 조항 제정 현황 : 없음

□ 경기도 외 유사 조항 제정 현황

○ 광역시·도 : 인천광역시(최초),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개정전, 의회조례 통과)

○ 시·군·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상위법령 저촉 여부 :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준수 필요

○ 정당 현수막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제8조의 적용배제 사항으로 동 시행령 제35조의2에 그 표시방법이 제한되어 있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정당이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제2호에 따른 표시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 인천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의결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인천광역시의 집행정지는 대법원에서 기각, 무효소송은 진행중

○ 상위법 위임 없이 현행 법령에는 없는 개수 제한 및 강제 철거 조항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 제소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진행 중이며, 동법시행령 개정안 또한 공표될 예정

- 상위법 위임문제에 따라,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조례의 개정을 보류하고 있으며, 이번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에 맞춰 각 기초단체의 조례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해당 법령과 시행령의 개정 시기를 맞춰 개정되는 조항을 준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 됨

□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2024. 1. 1. 시행 예정)

- 정당 현수막 설치 요건 개정(안 제8조)
 - 읍·면·동 별 2개 이하로 설치 수량 제한
 - 설치 금지 장소 및 규격, 기간, 표시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 사진 철거 조항 신설
- 위반 등에 대한 조치 강화(안 제10조)
 - 정당 현수막 규정 위반 시 제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개정
- 행정대집행의 특례 강화(안 제10조의2)
 - 추락 등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철거가 가능하도록 개정

□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정당 현수막의 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 방법 규정(안 제35조의 2)
 -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 규정(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 정당 현수막 규격(10m² 이내) 규정
 - 표시기간 표시방법과 최소 글씨크기(세로 크기 5cm) 규정
 - 설치 방법 금지
 - 다른 현수막·신호기·안전표지 가림 금지 및 도로횡단 금지
 - 가로등·전봇대 등에 현수막 2개 초과 설치 금지
 -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 구간 내 현수막높이 2.5m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개정 2022. 6. 10.>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 ⑥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정당이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제2호에 따른 표시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문 기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제외한다.<개정 2017. 9. 27.>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 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7. 9. 27.>
-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7.>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 간판 및 애드벌룬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9. 27.>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 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삭제<2017. 9. 27.>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 9. 27.>

1. 도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 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으로 시장이 원활한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8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7.>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7.>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

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 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 9. 27.>

③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9. 27.>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9. 27.>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영 제27조 제4항에 따라 주민협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7.>

1. 주민협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 9. 27.>

제11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7.>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 9. 27.>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7.>

1. 법과 영 및 도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2(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심의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간접 관여한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이 대상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심의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심의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27]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9. 27.>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

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②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새로운 위탁자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⑤제4항의 단서와 같이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의2(수탁기관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의3(지도감독 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의4(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90일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삭제 <2017. 9. 27.>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9. 27>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취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제25조제5항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반환) ①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계시대 수탁관리자는 시장에 갈음하여 수탁받은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잔여기간에 한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3. 광고주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 단축을 위해 그 취소 및 변경 등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17. 9. 27.]

[중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7. 9. 27.>]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7.>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개선·정비한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는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경우 그 수수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개정 2017. 9. 27.>

[제27조에서 이동 <2017.9.27>][중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7. 9. 27.>]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 9. 27.>

[제28조에서 이동 <2017.9.27.>]